

통계관리규칙

제정 2023.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산업통계”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 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4. “통계생산업무”란 통계자료를 생산, 변경, 공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통계행정업무”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6. “통계책임관”은 법 제6조에 의거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이 된 자로 정책연구 총괄 부서장을 말한다.
7.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지원하며 통계생산의 행정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통계작성부서”란 콘텐츠와 콘텐츠산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실무

부서를 말한다.

9. “통계전담자”란 통계총괄부서에서 통계생산 행정 사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계담당자”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통계 작성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진흥원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계 행정업무 조직과 운영

제4조(통계책임관) 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통계를 총괄하여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총괄 부서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하며,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소관 통계관련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조정에 관한 사무
3. 소관 통계의 승인,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4. 소관 통계관련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조정에 관한 사무
5. 통계 처리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
6. 통계관련 교육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무

제5조(통계총괄부서) 원장은 통계책임관 산하에 통계총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에 통계전담자를 배치하여 통계생산 행정 사무를 상시 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담당자 지정)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수반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게 통계담당

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계교육)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전담자 및 통계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총괄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통계총괄부서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시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 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매년 3월 31일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장 통계 작성 및 공표

제9조(수요조사의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산업계 요구 등 통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작성 가능여부, 작성시기, 가용예산 등을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통계 작성을 해당 부서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에 대해 진흥원의 기획·예산 및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통계 작성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가 포함된 새로운 연구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부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작성 통계를 승인 받으려는 부서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통계 예산의 검토·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진흥원의 통계작성이 포함된 연구사업과 관련한 예산(국고 및 기금)의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및 관리·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며, 관련 절차는 「정책연구관리규칙」을 따른다.

제12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생산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 사업용역) ① 통계 또는 통계가 포함된 연구 및 조사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에는 전체 평가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통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 또는 통계전담자는 통계 혹은 통계가 포함된 연구 및 조사사업의 용역계약 착수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14조(통계 공표 및 협의)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의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총괄부서는 통계를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 등)를 등록하고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통계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4장 통계자료의 관리

제16조(통계자료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는 작성·생산한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통계총괄부서에 송부하여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보관 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자료 제공)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에 대해 이용자, 이용방법 등의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이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 목적 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 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규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통계책임관은 진흥원의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